

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
제 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

1. 전자관보 제20905호(2024.12.31.)와 관련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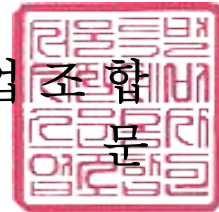
2. “수도권 내 출퇴근 시간대 교통수단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행이 출퇴근 시간대에만 이루어지고, 기점과 종점이 교통수단 이용의 편의성 및 교통 혼잡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도권 내 지역에 위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(상세 요건은 전자관보 참조)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의 통근을 위한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내용”을 골자로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,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시행일 : 공포 후 시행 (24.12.31)

※ 불 임 : 전자관보 1부. [끝]

※ 불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이사장 오 성 문



과 장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상 무 (전결) 박호동 이사장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25- 1호 (2025.1.2) 접수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(교통회관 11층)
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

()
/ <http://www.tourbus.or.kr>
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